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심발전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‘인허가 의제’ 규정이 신설되어, 이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시계획의 승인 등(안 제11조의2 신설)

- 실시계획 신청방법,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

나. 실시계획 승인기준(안 제11조의3 신설)

- 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승인결과 통지 의무 부여

다. 실시계획의 변경승인(안 제11조의4 신설)

-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준(위치 변경, 면적 증감 등)을 규정하고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

라.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고시(안 제11조의5 신설)

-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고시 의무 부여 및 고시 내용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23. ~ 10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 2건 신설

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
2. 개발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3. 개발사업의 목적·개요 및 주요 시설의 설치 내용
4. 개발사업의 시행기간
5.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
6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과의 관계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시·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

2.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자금조달계획서
 3.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또는 시설의 현황 및 그 사용·수용 또는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4. 주요 시설의 배치도 또는 설계도서
 5. 환경·문화유산 보전과 재난·안전관리에 관한 서류
 6.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의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 7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서류
- 제11조의3(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등)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부합할 것
 2. 실시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
 3. 개발사업의 위치, 규모, 주요 내용 및 시행기간 등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
 4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지정섬의 개발목표 및 정주여건 개선에 적합할 것
 5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
 6. 개발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환경·문화유산 보전과 재난·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적정할 것
- ②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인

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항이 없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내용, 조건 및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11조의4(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등) ① 법 제9조의2제1항 후단에서 “부지,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

2. 사업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증감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및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관계 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승인”은 “변경승인”으로 본다.

제11조의5(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
3.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
 4. 개발사업의 시행기간
 5. 주요 시설의 설치 내용
 6.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인허가등의 종류
 7. 변경승인의 경우 그 변경 내용
 8. 관계 서류의 열람 장소
-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 청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) 2. 개발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 의 위치 및 면적 3. 개발사업의 목적·개요 및 주요 시설의 설치 내용 4.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.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6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확정 된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 획과의 관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다 만,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시·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성격과 규모 에 비추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

<신 설>

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
 2.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자금조달 계획서
 3.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또는 시설의 현황 및 그 사용·수용 또는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4. 주요 시설의 배치도 또는 설계도서
 5. 환경·문화유산 보전과 재난·안전관리에 관한 서류
 6.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의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 7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서류
- 제11조의3(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등)
-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부합할 것
 2. 실시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

적합할 것

3. 개발사업의 위치, 규모, 주요 내용 및 시행기간 등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

4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지정섬의 개발목표 및 정주여건 개선에 적합할 것

5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

6. 개발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환경·문화유산 보전과 재난·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적정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항이 없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내용, 조건

<신 설>

및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11조의4(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등)

① 법 제9조의2제1항 후단에서 “부지,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
2. 사업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증감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및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관계 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승인”은 “변경승인”으로 본다.

제11조의5(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

시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

<신 설>

도지사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
및 주소

3.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

4. 개발사업의 시행기간

5. 주요 시설의 설치 내용

6.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
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
인허가등의 종류

7. 변경승인의 경우 그 변경 내용

8. 관계 서류의 열람 장소

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
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제1항에
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
생한다.

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
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
가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
도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하도록 규
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법
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20